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출국대기실 관리비용 부담 범위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신설(안 제88조의2)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대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장소와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장 등은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허가 시 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송환대상외국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장등은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대기실 재입실을 명할 수 있음

나. 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및 외출 규정 신설(안 제88조의3)

청장 등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 선박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송환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고, 송환대상외국인이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는 외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출국대기실 관리 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신설(안 제88조의4)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장등이 운수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출국대기실 이외의 시설(환승호텔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청장등의 요청에 의해 관리를 맡은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청장등에게 지출금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지출비용의 청구, 납부 고지서 발급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송환대상외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의2 앞에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 (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장소,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 대기장소,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기재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등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

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8조의3(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등) 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 일시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의뢰서를 받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병원진료, 여권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⑥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5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의4(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절차)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침구·생활용품·음식물 등의 구체적 제공범위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송환대상외국인이 제88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출국대기실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발생한 숙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귀책사유 있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 등으로 퇴실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납부고지서를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

2.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3.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6. 미납 시 조치사항

⑥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관리한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출국 등으로 관리가 종료된 때에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지출금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세부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출비용의 청구, 납부 고지서 발급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88조의5 앞에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u>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u> 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 ----- ----- <u>송환대</u> <u>상외국인</u>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요구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u> <u><신 설></u>	<u><삭 제></u> <u>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① 송환대상 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자 할</u>

<신 설>

때에는 대기장소,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 대기장소,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기재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등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8조의3(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등) 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일시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의뢰서를 받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병원진료, 여권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

<신 설>

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⑥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5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의4(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절차)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침구·생활용품·음식물 등의 구체적 제공범위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송환대상외국인이 제88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발생한 숙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귀책사유 있는 선박등의 장 또

는 운수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지출
된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지출
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다.

④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
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 등
으로 퇴실한 때에는 제3항에 따
른 지출비용의 납부고지서를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
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내
야 한다. 다만 송환대상외국인
에 대한 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
장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를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

2.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3.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신 설>

6. 미납 시 조치사항

⑥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관리한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출국 등으로 관리가 종료된 때에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지출금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세부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출비용의 청구, 납부고지서 발급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16